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04. 9. 16.
행정위원회

1. 심사 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7월 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4년 9월 13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08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2004년 9월 16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정진)

가. 제정이유

- 집행법률 미제정으로 지방자치법에 도입근거만 명문화 되어 있던 주민투표제가 투표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2004년 1월 29일 공포되었고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주민투표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금년 4월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에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도 행정자치부의 주민투표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주민투표조례(안)을 제정하여 주민투표의 근거를 마련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3조에서는 “20세 이상의 외국인 중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 토탈 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금지대상을 제외한 다음 각호를 “주민투표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 각 호의 내용을 보면
 -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분합에 관한 사항
 - 구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체, 구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입니다.
 - 다만, 위 사항 중 중앙행정기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절차요구” 또는 “승인사항의 추진여부에 관한 사항”만이 주민투표 청구대상에 해당됩니다.
 - 법 제7조2항에서 규정한 주민투표 금지대상은
 -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체,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 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 안 제5조에서는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서명하는 주민의 수를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 및 제11조에서는 주민투표에 따른 서명요청기간과 서명보정기간을 각각 90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주민투표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회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토록 함으로써, 외부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 안 제16조에서는 주민투표 운용의 제한과 관련한 사항으로 허별방문과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주민투표법 제2조제1항.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찬재)

-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과 서울시의 준칙안을 기준으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먼저 조례안 제2조에서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를 구청장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투표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고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한 적절한 규정이나 본 조례안 제2조제3항에서는 정보와 자료를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한정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례안 제18조의 공표방법 등에서는 “구보, 게시판, 일간신문, 구 홈페이지에의 게시 또는 게재”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구로구 등 12개구에서는 “성실히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음 조례안 제3조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서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자에게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관내 거주 외국인수가 2004년 7월 31일 현재 총 8,419명이고 그중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266명이며 이중 20세 이상은 202명으로 사실상 투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할 수 있지만 세계화의 시대에 상정하는 의미가 매우 크며, 우리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해결해야 한다는 주민자치 정신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4조의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투표 대상의 제한과 실효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6호에 포함적인 규정을 두었음.
- 조례안 제5조의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유형으로 제시된 인구수 30만 이상 50만 미만의 적용비율인 14분의 1로 규정하였으나 대상범위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14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됨. 주민 투표청구의 충분한 기회 보장과 투표 청구의 남발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사항이라 판단됨.
- 조례안 제12조에 주민투표 청구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공무원, 구의원, 변호사 등 전문성이 있는 민간인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 운영토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조례안 제16조에 투표운용의 제한 규정을 두어 주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과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됨.
- 기타 조항은 서식, 공표방법 등 행정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문체가 없다고 사료됨.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요지

- 안 제12조 제3항의 심의회 구성 시 위원수에 상한을 두어 보다 내실 있는 심의회 운영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 안 조례의 부칙에 있는 시행일 경과로 시행일 수정

나. 수정주요골자

- 안 제12조 제3항의 내용 중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로 수정함.
- 안 조례의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함.

5.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로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의 안 번 호	관 련 114호
------------	-------------

제출년월일 : 2004. 9. 16.
제 출 자 : 김영진 위원

1. 수정이유

주민투표구심의회 구성 시 위원수에 상한을 두어 보다 내실 있는 심의회 운영을 기하고, 부칙에 있는 시행일의 경과로 시행일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2조 제3항의 내용 중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로 함.
- 안 조례의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제정조례안에대한 수정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에서 제11조(서명보정기간)까지 (생략)	제1조(목적)에서 제11조(서명보정기간)까지 (제정안과 같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②(생략)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u>7인 이상의</u>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생략)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②(제정안과 같음)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u>7인 이상 9인 이하의</u>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제정안과 같음)
제13조(심의회 운영)에서 제18조(공표방법 등)까지 (생략)	제13조(심의회 운영)에서 제18조(공표방법 등)까지 (제정안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안)

의안
번호 114

제출년월일 : 2004. 7. 7.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 보장을 통해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주민투표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경에 적극 반영시키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20세 이상의 외국인중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음(안 제3조)
- 나. 주민투표의 대상(안 제4조)
-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분합에 관한 사항
 - (2) 구 및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항
 - (4)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구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 (5)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 다. 주민투표 청구주민수는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함(안 제5조)
- 라. 서명요청기간은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함(안 제7조)
- 마. 서명보정 기간은 10일 이내로 함(안 제11조)
- 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12조, 제13조)
- (1)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심사대상
 -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 (2) 심의회 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 (3)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함
- 사. 투표운동의 제한(안 제16조)
- (1)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 금지(제1항)
 - (2)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 집회 금지(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주민투표법 제2조제1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 라. 기타
-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안 “별첨”
 - (2) 입법예고(2004. 6. 18. ~ 2004. 6. 27.)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①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 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분합에 관한 사항
2. 구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구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와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

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②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 ④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영등포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영등포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 과장이,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
- ④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 ⑤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⑥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관련부서의 협조지원)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처리기간) ①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

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18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구보·계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구 홈페이지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2 영등포구청장 귀하						
※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2호 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영등포구청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3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4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인)

*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책 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한다.
2.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3.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주 민 투 표 청 구 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p>※ 첨부서류 : 관련자료</p> <p>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p>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7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참고 :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